

제 호

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
(건설기계·자동차·항공기·철도차량 및 그 밖의 물자용)

소유자:

주 소:

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물자를 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무를 고지합니다.

물자의 품목	규격·구조 및 등록번호	단 위	수 량	임무고지 내용			임무기간
				사용기관 (인수기관)	인도 및 인수 장소	동원일	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

년 월 일

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권자 **작 인**

..... 자르는 선 (간인)

제 호

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

수령자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	
	수령일시		수령장소	